

제24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4.24.)

조례안 · 일반의안 심사 보고서



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목 차

1	거창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1
2	거창군 향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7
3	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안 -----	14
4	거창군 낙농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5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6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1
7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4
8	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	47
9	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 민간위탁 동의안 -----	57
10	거창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60
11	거창사과전망대 거창농특산물판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64

거창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 2. 24, 신재화의원 등 11명 발의
- 나. 회부일자 : 2020. 2. 24.
- 다. 상정일자 : 제247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2020. 4. 21.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신재화 의원]

- 가. 제안이유
 -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관리계획 심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나. 주요내용
 - 위원회 구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기능, 직무, 운영, 위촉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조 ~ 제 6조)
 - 관계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7조)
 -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춘곤)

- 본 조례안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관리계획 심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 주요내용은
 - 안 제1조는 조례제정의 목적
 - 안 제2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 안 제3조는 위원회의 기능 의 사용료 감면률 기준
 - 안 제4조는 위원장의 직무
 - 안 제5조는 위원회의 운영
 - 안 제6조는 위원의 위촉 해제
 - 안 제7조는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 안 제8조는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 검토의견으로는
 - 위원회 구성의 목적, 구성 및 임기, 기능, 직무, 운영, 위원의 위촉 해제,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운영세칙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지하시설물에 대한 지반침하 위험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중점관리시설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됨.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거창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거창군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2.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거창군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 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의뢰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에서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안전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업무담당자이다.

⑦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향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 4. 7,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0. 4. 8.
- 다. 상정일자 : 제247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2020. 4. 21.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태환 산림과장]

- 가. 제안이유
 -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약초가공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향노화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향노화산업 육성에 이바지하기 위함
- 나. 주요내용
 - 향노화 산업 육성 지원 대상 확대함(안 제6조제1항제7호)
 - 향노화 제품, 약초 및 약초 가공품을 활용한 주민 건강증진 사업
 - 약초 가공품 지원근거 신설(안 제6조제2항)
 - 향노화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정함(안 제11조의2)
 - 1) 기능 : 군민의 성별·연령별·계층별 특성 및 요구도를 반영한 건강관리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민관협력체계

구축, 건강관리 강사 인력관리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등

2) 위탁운영 근거 마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준곤]

○ 본 조례안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약초가공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향노화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향노화산업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주요내용은

- 안 제6조(향노화산업의 육성 지원) 제1항 제7호 및 제2항 신설 신설된 제7호에서 향노화 제품, 약초 및 약초 가공품을 활용한 주민 건강증진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에서는 향노화산업 홍보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향노화 제품이나 약초 가공품을 예산 범위에서 마을 단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11조의2에서는 향노화지원센터 설치 등에 대한 사항
- 기존 거창약초유통센터에 관한 사항(제12조~14조)는 삭제하였습니다.

○ 검토의견으로는

- 군민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총괄하는 향노화 지원센터 위치는 확정하지 않아 조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약초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업무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해당하여 연말까지 관련조례를 제정할 계획에 있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군민의 건강증진과 향노화산업 육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 됨.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향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향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향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기존 제목 외의 부분)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향노화 제품, 약초 및 약초 가공품을 활용한 주민 건강증진 사업

② 군수는 향노화산업 홍보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향노화 제품이나 약초 가공품을 예산 범위에서 마을 단위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향노화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향노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군민의 성별·연령별·계층별 특성 및 요구도를 반영한 건강관리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2. 건강관리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3. 건강관리 강사 인력관리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등
 4. 그 밖에 건강관리 관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그 운영·관리를 관련 단체·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항노화산업의 육성 지원) 군수는 항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이 권장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항노화 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개발 2. 항노화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및 관리 3. 항노화산업 관련자 간에 공동으로 실시하는 항노화 제품 및 서비스의 표준화, 상표개발 4. 항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5. 약초 가공품의 생산, 판로개척 및 마케팅 등 6. 약초 생산관련 종자, 묘목, 농자재 및 재배시설, 농기계 등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7. 그 밖에 군수가 항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제6조(항노화산업의 육성 지원) ① 군수는 항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이 권장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항노화 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개발 2. 항노화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및 관리 3. 항노화산업 관련자 간에 공동으로 실시하는 항노화 제품 및 서비스의 표준화, 상표개발 4. 항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5. 약초 가공품의 생산, 판로개척 및 마케팅 등 6. 약초 생산관련 종자, 묘목, 농자재 및 재배시설, 농기계 등 7. <u>항노화 제품, 약초 및 약초 가공품을 활용한 주민 건강증진 사업</u> 8. 그 밖에 군수가 항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u>② 군수는 항노화산업 홍보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항노화 제품이나 약초 가공품을 예산 범위에서 마을 단위로 지원할 수 있다.</u></p> <p>제11조의2(항노화지원센터 설치 등)</p> <p><u>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노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군민의 성별·연령별·계층별 특성 및 요구도를 반영한 건강관리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u> 2. <u>건강관리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u>

<p><u>제12조(거창약초유통센터 설치 및 위치)</u> <u>① 군수는 약초, 향노화 제품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거창약초유통센터(이하 “약초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u> <u>② 약초센터는 거창읍 거합대로 3372 일원에 둔다.</u></p> <p><u>제13조(약초센터의 기능) 약초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1. <u>약초의 순회수집·집하·선별·소분·전처리 및 저장</u> 2. <u>약초와 향노화 제품의 전시·판매 및 마케팅</u> 3. <u>향노화 제품 개발</u></p> <p><u>제14조(약초센터의 위탁) 군수는 약초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약초센터의 관리·운영을 약초생산자 관련 단체·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u></p> <p><u>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u>민관 협력체계 구축</u> 3. <u>건강관리 강사 인력관리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등</u> 4. <u>그 밖에 건강관리 관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u>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그 운영·관리를 관련 단체·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u></p> <p><u><삭 제></u></p> <p><u><삭 제></u></p> <p><u><삭 제></u></p> <p><u><삭 제></u></p>
---	---

거창군 향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비용 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관련조문 : 안 제6조제2항, 제11조의2

나. 비용 발생 요인 : 약초가공품 등 주민에게 지원, 향노화지원센터 운영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 계	50	100	100	100	100
약초가공품 지원	30	60	60	60	60
지원센터 강사료	15	30	30	30	30
지원센터 운영비	5	10	10	10	10

3. 관련 의견

약초 가공품을 활용하여 지역주민 건강증진과 공동체형성

작성자 : 산림과장 최 태 환

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 4. 7,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0. 4. 8.
- 다. 상정일자 : 제247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2020. 4. 21.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태환 산림과장]

- 가. 제안이유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된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나. 주요내용
 - 위임조례임을 명시함(안 제1조)
 - 법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양림의 명칭 및 위치를 정함(안 제2조)
 - 명칭 :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 위치 : 가조면 수월리 산 19번지 일원

- 시설 및 운영을 정함(안 제3조)
- 입장료·체험료·시설사용료, 할인 등을 정함(안 제4조, 별표 1, 별표 2)
- 입장료 등 면제 및 반환을 정함(안 제5조·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춘곤]

- 본 조례안은 국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된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주요내용은
 - 안 제1조~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
 - 안 제3조에서는 향노화 힐링랜드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제6조에서는 힐링랜드의 입장료 및 체험료, 입장료 등 면제, 입장료 등 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 검토의견으로는
 - 본 조례안을 통해 향노화 힐링랜드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안

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양림 명칭은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이하 “힐링랜드”라 한다)라 한다.
② 힐링랜드의 위치는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산 19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시설 및 운영)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힐링랜드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산림치유센터, 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운영사무실, 편의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다.
② 힐링랜드 운영시간 및 휴관일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입장료 등 징수 및 할인) ① 힐링랜드의 입장료 및 체험료는 별표 1, 시설사용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비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할인권 발행, 가족단위 방문자에 대한 시설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장료 등의 징수, 할인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입장료 등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7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3. 「거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등 시설사용자
 6. 그 밖에 군수가 힐링랜드에 공익목적의 행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설사용료 또는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등, 공익목적: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2. 영 제9조의7제2항제5호부터 제10호의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휴양관 또는 숲속의집 사용자, 공무수행자: 주차장 사용료

제6조(입장료 등 반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1. 거창군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된 경우(다만, 탐방 또는 시설 사용을 완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자가 사용일 이전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다만 사용일 그날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0퍼센트 반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1항의 입장료, 시설사용료(주차장 사용료는 제외한다)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입장료 및 체험료(제4조제1항 관련)

1. 입장료

구분	어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개인	1,000원	700원	300원
단체	700원	500원	200원

2. 체험료

구분	기준	요금
산림치유센터	30분	어른: 5,000원 청소년·어린이: 3,000원
산림치유프로그램	체험에 실제 필요한 비용	

[별표 2] 시설사용료(제4조제1항 관련)

시설명	구분	사용기준	사용료	
			성수기	비수기
주차장	승용차, 승차인원 15인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30분	500원 (10분 초과당 200원)	
		1일	5,000원	
	승차인원 16인 이상 승합차, 1톤 초과 화물차	30분	1,000원 (10분 초과당 400원)	
		1일	10,000원	
산림휴양관	36제곱미터 (2인~4인)	1일	100,000원	70,000원
	52제곱미터 (6인~8인)		140,000원	90,000원
	80제곱미터(10인)		180,000원	150,000원
숲속의 집	38제곱미터(2인~4인)	1일	100,000원	70,000원
	52제곱미터(6인~8인)		140,000원	90,000원
셔틀버스	힐링랜드 시설사용자: 무료			

비고: 1회 주차 시 누적시간으로 산정한 금액이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할 경우 1일 주차요금으로 징수한다.

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안 비용 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비용

나. 제2조제3항 : 군수는 힐링랜드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산림치유 센터, 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운영사무실, 편의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계
군비	569	549	559	570	581	2,828

-최근 물가상승률 1.9퍼센트 반영

3. 관련 의견

산림치유로 인한 국민의 정서함양 및 효율적인 향노화 힐링랜드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 예산 필요함

4. 비용추계 요약

가. 인 건 비 : 60백만원

나. 일반관리비(제세공과금 등) : 479백만원

다. 민간행사 사업보조 : 30백만원(2020년만)

작성자 : 산림과장 최 태 환

**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 4. 7,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0. 4. 8.
- 다. 상정일자 : 제247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2020. 4. 21.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덕기 환경과장]

- 가. 제안이유
 -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는 2017년 낙동강수계 특별지원사업에 국농소 마을회 소속 농업회사법인 “강과사람”이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올해 준공됨에 따라 그 설치와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나. 주요내용
 - 위임조례와 자치조례가 함께 규정되었음을 명확히 함(안 제1조)
 - 입법체계상 맞지 않는 규정 삭제(안 제2조)
 - 용어순화, 띄어쓰기 등 정비(안 제3조·제4조·제6조·제7조)

-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신설(안 제8조)
 - 낙동강수계 특별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설치
 -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의 기능
 - 하천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 지역농특산물 전시·판매
 - 환경교육센터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운영 등
 -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위탁근거 마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춘곤]

- 본 조례안은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준공에 따라 그 설치와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주요내용은
 - 안 제8조에서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사항으로 낙동강수계 특별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설치와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의 기능(하천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역농특산물 전시·판매, 환경교육센터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운영),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위탁근거 마련 등을 정하였습니다.
- 검토의견으로는
 - 조례 개정의 목적,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 정비,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기능 등을 규정하였으며,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 중 “지원대상지역”을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지원대상지역(이하 “지원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제목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를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을 “사업”으로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를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군의원”을 “거창군 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읍·면장이 제출한 사업에 대하여 거창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해당 지원대상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창군의회 동의 받은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사업을 선정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① 군수는 법 제23조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환경교육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천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지역농특산물 전시·판매
3. 환경교육센터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운영
4. 그 밖에 하천환경, 지역주민 복지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물 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거창군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u>제2조(적용범위) 법 제23조에 의한 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u></p> <p><u>제3조(주민회의 개최) 지원대상지역 이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리별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u>제4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u> ① 지원대상지역 읍·면장은 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u>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u>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읍·면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원대상지역의 <u>군의원과</u> 이장으로 한다. ③ 당해 읍·면장은 주민회의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p>	<p><u>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u>제3조(주민회의 개최)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지원대상지역(이하 “지원대상지역”이라 한다) 이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리별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u>제4조(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u> ① 지원대상지역 읍·면장은 <u>사업을</u>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u>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u>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u>해당</u> 읍·면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원대상지역의 <u>거창군 의원과</u> 이장으로 한다. ③ <u>해당</u> 읍·면장은 주민회의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p>

제6조(사업계획수립) ① (생략)

② 군수는 읍·면장이 제출한 사업에 대하여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업선정 시 주민숙원사업 중 우선 순위에 의하여 선정하되,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계획수립 등 통보)

① (생략)

② 당해 읍·면장은 제1항에 의한 통보 시 해당 이장 및 지원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제6조(사업계획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읍·면장이 제출한 사업에 대하여 거창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해당 지원대상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창군의회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사업을 선정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사업계획수립 등 통보)

① (현행과 같음)

② 해당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 시 해당 이장 및 지원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

제8조(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① 군수는 법 제23조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환경교육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천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지역농특산물 전시·판매
3. 환경교육센터 이용자를 위한 편의 시설 운영
4. 그 밖에 하천환경, 지역주민 복지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거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 2. 24,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0. 2. 24.
- 다. 상정일자 : 제247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2020. 4. 21.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안장근 도시건축과장]

- 가. 제안이유
 - 「건축법」 개정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정하고 법령 위임 범위를 벗어나 법령위배 소지가 있는 내용 등을 정비하기 위함
- 나. 주요내용
 - 조문 정비(안 제6조제1항)
 - 법령위임 범위 벗어나 법령위배 소지 규정 삭제
 - 1) 건축위원회 심의 생략 사유 중 별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 현상공모에 의한 건축설계 작품(안 제6조제2항제4호)
 - 2) 이행강제금 감경 위반행위 중 신고하지 않은 가설건축물

(안 제42조제2항제1호)

-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한 적용완화 규정 정비(안 제15조제1호·제2호)
-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에치금 산정기준·예치방법 변경(안 제23조)
- 가설건축물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 축소(안 제26조제4호)
- 조례로 위임되지 않은 법령 확인·재기재 사항 삭제

(안 제34조제3항)

- 1) 위임행정규칙인 국토교통부고시 조경기준에 따르면 되는 조경에 필요한 면적의 산정기준

- 법 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규정 변경(안 제42조제1항·제3항)

- 1) 이행강제금의 감경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85제곱미터 이하에서 60제곱미터 이하로 축소됨에 따라 그 내용 정비

- 2) 법령위임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변경

- 총 부과횟수 5회 ⇒ 1년에 한 번

- 공작물 범위의 모호한 기준 정비(안 제43조제1항제1호·제2호, 제2항)

- 1) 삭제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춘곤]

- 본 조례안은 「건축법」 개정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정하고 법령 위임 범위를 벗어나 법령위배 소지가 있는 내용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검토의견으로는

- 건축위원회 심의 생략 사유 중 별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 현상공모에 의한 건축설계 작품을 삭제하고, 이행강제금 감경 위반행위 중 신고하지 않은 가설건축물 조항은 삭제하는 등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조 제목 “(위원장 등의 직무 등)”을 “(위원장의 직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날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법 제4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와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에 따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2. 주택과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주택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3.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100실 이상인 건축물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간사는 건축사업 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건축사업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도로 및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한 완화) 법 제5조 및 영 제6조

제1항제7호의2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제23조 조 제목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에치금 등)”을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에치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용”을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예치하는 금액은 건축 공사비의 1퍼센트로 함.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 가. 공사시공자의 도장이 찍힌 도급계약서
 - 나. 건축주가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 표준품셈에 따라 작성한 공사원가 계산서
2. 예치금은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함

제26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제6호를 제4호·제5호로 한다.

제31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4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는 별표 3과 같다.

제42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제3호를 제1호·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을 말한다.
- ③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는 1년에 한 번만 한다.

제43조제2항 중 “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를 “한다)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조시설: 레미콘·아스콘·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로 높이 6미터 이상인 것
2. 저장시설: 시멘트사일로·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 등 저장시설로 높이 6미터 이상인 것

제4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또는 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등) ①~②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날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법 제4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하며,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p> <p>1. 삭제 (2017.1.25.)</p> <p>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p> <p>가.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p> <p>나. 주택과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주택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p> <p>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100실 이상인 건축물</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것)</p> <p>1. 영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p>	<p>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법 제4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와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에 따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p> <p>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p> <p>2. 주택과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주택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p> <p>3.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100실 이상인 건축물</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것)</p> <p>1. 영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p>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3.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한 사항과 영 제5조에 따라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4. 현상공모에 의한 건축설계 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생략)
② 간사는 건축사업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건축관련업무 부서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제15조(도로 및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한 완화) 법 제5조 및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동·식물 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2.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제23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에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예치대상 건축물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3.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한 사항과 영 제5조에 따라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삭 제>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건축사업 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건축사업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5조(도로 및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한 완화) 법 제5조 및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제23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의 예치대상 건축물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그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군수에게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예치하는 금액은 건축 공사비의 1 퍼센트로 한다.

2. 예치금은 「거창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의 보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예치금은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④ (생략)

제26조(가설건축물) ① (생략)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1. 공장이 있는 부지 안에서 지면(바닥)에 레일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것
2. 천막구조로 된 창고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3. 공장이 있는 부지 안에서 기계설비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그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군수에게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예치하는 금액은 건축 공사비의 1 퍼센트로 함.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가. 공사시공자의 도장이 찍힌 도급 계약서

나. 건축주가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 표준품셈에 따라 작성한 공사 원가계산서

2. 예치금은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함

<삭 제>

③~④ (현행과 같음)

제26조(가설건축물)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1. 공장이 있는 부지 안에서 지면(바닥)에 레일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것
2. 천막구조로 된 창고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3. 공장이 있는 부지 안에서 기계설비

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4. 토지에 정착하여 설치하는 비닐하우스와 이와 유사한 구조의 화원

5. 공장부지안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 목적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31조(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①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지급할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기준은 매년 1월에 군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한다.

제34조(대지의 조경)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의 산정 등 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모두 산입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 및 필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기준의 4분의 1에 해당하는면적까지 산입한다. 다만, 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삭 제>

4. 공장부지안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 목적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31조(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①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지급할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34조(대지의 조경)

①~② (현행과 같음)

<삭 제>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3. 공동주택(주택이외의 용도와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건축물의저층부분 및 옥상부분의 조경면적의 3분의 2의 면적까지로 한다.

4. 그 밖에 조경의 배치, 수종 및 식재기준 등에 대하여는 법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④ (생략)

제38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3과 같다.

제42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과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인 경우에는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② 영 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위반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59조에 따른 맞벽 건축기준에 위반한 경우

③ 법 제80조제5항 단서에 따라 제1항의 경우 총 부과 횟수는 5회 이내로 한다.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제38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는 별표 3과 같다.

제42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을 말한다.

② 영 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위반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삭제>

1.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59조에 따른 맞벽 건축기준에 위반한 경우

③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는 1년에 한 번만 한다.

제43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 1. 제조시설: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높이 6미터 이상인 것
- 2. 저장시설: 시멘트사일로·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높이 6미터 이상인 것
-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 4. 소각시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기존건축물에 설치하는 적재하중 12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 이미 설치한 중량을 포함한다)인 냉각탑·중탑·물탱크·변전설비·인양기(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의 하중을 포함하며, 화물인양기의 경우에는 화물 만재시의 하중으로 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45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3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 1. 제조시설: 레미콘·아스콘·석유화학 제품 제조시설로 높이 6미터 이상인 것
- 2. 저장시설: 시멘트사일로·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 등 저장 시설로 높이 6미터 이상인 것
-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 4. 소각시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기존건축물에 설치하는 적재하중 12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 이미 설치한 중량을 포함한다)인 냉각탑·중탑·물탱크·변전설비·인양기(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의 하중을 포함하며, 화물인양기의 경우에는 화물 만재시의 하중으로 한다)를 말한다.

<삭 제>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 4. 7,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0. 4. 8.
- 다. 상정일자 : 제247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2020. 4. 21.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진태 수도사업소장]

- 가. 제안이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와 같은 재난발생 시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도요금 감면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나. 주요내용
 - 수도요금 감면 신설(안 별표 7)
 - 1) 감면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 소상공인의 군 소재 사업장
 - 2) 감면율 : 50퍼센트
 - 3) 감면기간 : 3개월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춘곤)

- 본 조례안은 재난발생 시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도요금 감면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주요내용은
 - 안 별표 7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 1) 감면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 소상공인의 군 소재 사업장
 - 2) 감면율 : 50퍼센트
 - 3) 감면기간 : 3개월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중 타목란, 비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감면 대상	감면율
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군 소재 사업장	50퍼센트

6. 타목에 따른 감면기간은 3개월.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요금감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 4. 7,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0. 4. 8.
- 다. 상정일자 : 제247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2020. 4. 21.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진태 수도사업소장]

- 가. 제안이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와 같은 재난발생 시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하수도요금 감면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나. 주요내용
 - 하수도요금 감면 신설(안 별표 7)
 - 1) 감면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 소상공인의 군 소재 사업장
 - 2) 감면율 : 50퍼센트
 - 3) 감면기간 : 3개월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춘곤)

- 본 조례안은 재난발생 시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하수도요금 감면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주요내용은
 - 안 별표 7에 따라 하수도요금 감면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 1) 감면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 소상공인의 군 소재 사업장
 - 2) 감면율 : 50퍼센트
 - 3) 감면기간 : 3개월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중 아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감면 대상	감면율
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군 소재 사업장	50퍼센트

비고

1. 가목에서 바목에 해당하는 감면은 중복 적용하지 **않음**
2.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감면은 가정용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실제 사용량이 5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감면함. 다만, 1개의 계량기로 부과되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사목의 경우 지방상수도로 전환 후 2년 이내에 급수신청의 경우에 한정하며, 4년차부터는 정상요금을 적용함
4. 아목에 따른 감면기간은 3개월.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요금감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 2. 24, 최정환의원 등 11명 발의
- 나. 회부일자 : 2020. 2. 24.
- 다. 상정일자 : 제247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2020. 4. 21.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정환 의원]

- 가. 제안이유
 -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의 생활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아가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기리기 위함.
-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 제2조)
 - 생활보조비 지원과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제4조)
 - 지급중단, 지급신청 및 결정, 지급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안 제7조)
 - 지급대장관리,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춘곤]

- 본 조례안은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의 생활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아가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기리기 위한 것으로서

- 주요내용은
 - 안 제1조는 조례제정의 목적
 - 안 제2조는 정의
 - 안 제3조는 생활보조비 지원
 - 안 제4조는 지원대상
 - 안 제5조는 지원중단
 - 안 제6조는 지급신청 및 결정
 - 안 제7조는 지급시기 및 방법
 - 안 제8조 ~ 제9조는 지급대장관리 및 환수 등을 정하였습니다.

- 검토의견으로는
 - 생활보조비 지원 목적, 정의, 지원 금액, 지원대상, 지급신청 및 결정, 지급시기 및 방법, 변동신고, 지급대장 관리, 환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음.
 -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됨.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의 생활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아가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기리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유족”이란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생활보조비 지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족에게 매월 생활보조비 100,000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① 생활보조비 지원대상은 6개월 전부터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유족으로서, 지급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한 명의 희생자에 대하여 한 명의 유족에게만 지급하며, 부모의 희생의 경우 한 명의 유족에게만 지급한다.

1. 배우자
2. 자녀 또는 손자녀, 다만 2명 이상인 경우 나이 많은 사람 우선
3. 부모 또는 조부모
4. 형제자매, 다만 2명 이상인 경우 나이 많은 사람 우선

제5조(지원중단)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다른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1. 사망한 경우
2. 거창군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3. 그밖에 지원대상자로서 요건이 소멸한 경우

제6조(지급신청 및 결정) 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생활보조비 지급결정 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시기 및 방법) ① 생활보조비는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대상의 자격을 상실할 때까지 지급한다.

② 군수는 매월 말일까지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한다. 단,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8조(지급대장관리) 군수가 생활보조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명확한 관리를 위하여 생활보조비 지급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생활보조비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생활보조비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이내
희 생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신 청 자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연락처				희생자와의 관 계	
	주 소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p>「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생활 보조비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 . .</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거창군수 귀하</p>						
신청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신분증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 3.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1. 사망자 및 유족결정안건의 개별 의결 요구서 및 결정서 2.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확인사항	○사망자 및 유족결정서 관리번호 : ○지급대상자 주소 : ○지급대상자 거창군 전입일 :					
확 인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거창사건의 유족 생활보조비 지급 정보 활용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주소, 연락처, 희생자와 관계

※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는 “생활보조비 지원신청서” 접수를 통해 수집됩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지원일로부터 5년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 결정통지서

희 생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신 청 자	성 명		생년월일	(남/여)	희생자와의 관 계	
	주 소				연 락 처	
결 정 일			지급대상 여 부	대상, 비대상		
비 대 상 결정사유						

귀하를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으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

거 창 군 수 (인)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관련조문

제3조(생활보조비 지원) 거창군수는 유족에게 매월 생활 보조비 100,000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결과

○ 추계의 결과

(단위:천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군비	96,000	96,000	96,000	96,000	96,000	480,000
	소계(a)	96,000	96,000	96,000	96,000	96,000	480,000

3. 관련 의견 : 유족에게 생활보조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생활보조비(년) : 80명×100천원×12월=96,000천원

작성자 :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 2. 24,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0. 2. 24.
- 다. 상정일자 : 제247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2020. 4. 21.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손병태 농업축산과장]

- 가. 제안이유
 - 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수탁자를 선정하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3년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현 황
 - 시설명 : 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
 - 위치 : 경남 거창군·읍 거함대로 3390
 - 규모 : 건물 - 163.38㎡, 대지 - 3,013㎡
 - 위탁사무
 - 시설운영 : 축산종합방역소 세척·소독시설 유지 및 관리
 - 기타사항 : 그밖에 운영에 필요로 하는 사항

○ 그간 추진사항

- 2019. 7월 : 축산종합방역소 건축공사 준공
- 2019. 11월 : 축산종합방역소 설치·운영 조례 제정 및 공포
- 2019. 12월 : 축산종합방역소 부대공사 준공
- 2020. 1월 : 소독시연회 및 소독유효성 평가 실시
- 2020. 2월 : 축산종합방역소 운영

○ 운영계획

- 위탁자 공모

위탁기간 : 2020. 4. ~ 2023. 4.(3년간)

- 위탁범위

축산종합방역소 시설물 유지·관리

기타 축산종합방역소 관리 필요에 따라 지시하는 사항

○ 소요예산

- 연간 30,000천원 정도(공공운영비 및 재료비 제외)

※ 운영 위탁금은 운영방법(특별방역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춘곤]

- 본 동의안은 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입찰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 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운영 및 위탁)

에서는 방역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역소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으로서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민간위탁 동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 3. 17,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0. 3. 17.

다. 상정일자 : 제247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2020. 4. 21.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윤중 농업기술과장]

가. 제안이유

- 거창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현 황

- 시 설 명 : 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
- 위 치 :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525-1 일원
- 주요시설 : 6.5ha
 - 과원시설 : 0.8ha (사과 0.6ha, 오미자 0.2ha)
 - 공원시설 및 부속건물 등 : 5.7ha

○ 위탁사무

- 과원시설(사과·오미자) : 청년 귀농인 재배 실습 및 교육 운영
- 공원시설 : 예취작업, 수목관리 등 공원 내 환경정비
- 관리동 및 농기계창고 등 기타부속시설 유지관리

○ 그간 추진현황

운영기간	위탁자	위탁범위	재정운영현황(원)		비고
			년도	임대료	
'09 ~'11년	생명두레문화교육원 (대표 한대수)	전체과원위탁	2009	없음	공모
			2010	없음	
			2011	6,600,000	
'12년 ~'14년	생명두레문화교육원 (대표 한대수)	사과·오미자과원 부분관리위탁	2012	7,000,000	갱신
			2013	7,450,000	
			2014	5,950,000	
'15년 ~'17년	베짱이영농조합법인 (대표 오승철)	전체관리위탁	2015	10,450,000	공모
			2016	9,434,740	
			2017	10,964,070	
'18년 ~'20년	베짱이영농조합법인 (대표 오승철)	전체관리위탁	2018	8,642,510	공모
			2019	13,133,070	

○ 운영계획

- 운영방법 : 민간위탁
 - 위탁기간 : 위·수탁체결일 ~ 2022. 12. 31.
- 위탁범위
 - 청년 귀농인 사과 재배실습 및 교육 운영
 - 사과테마파크 부지 및 시설에 대한 관리
 - 공원 시설 및 부속건물 관리 등
- 수탁단체(자) 선정 : 공개모집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후 선정
 - 근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 ‘20년 : 기존수탁자(홍로과원)와 위탁공모자(후지과원) 병행
운영

‘21년 ~ ’22년 : 위탁공모자가 전체과원을 재배실습장으로
운영

○ 소요예산 : 없음

※ 시설 사용료를 매년 12월 말경 조수입의 14% 거창군에 납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춘곤]

- 본 동의안은 거창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 위탁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 「거창군 사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조례」 제15조에 따르면 군수는 사과테마파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등”을 민간위탁 할 수 있고, 이 경우 군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거창사과 우수성의 적극적인 홍보 및 농·창업 활성화로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 조성에 이바지 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기술보유, 책임능력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사과전망대 거창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 3. 17,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0. 3. 17.
- 다. 상정일자 : 제247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2020. 4. 21.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정현수 행복농촌과장]

가. 제안이유

- 거창사과전망대 「거창농특산물판매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사)한국농업경영인 거창군연합회 (대표 : 구교천)에 재위탁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현 황
 - 위탁시설 : 거창농특산물 판매장 / 69.2m²
 - 위 치 : 거창한휴게소 광주방향 사과전망대 1층
 - 수 탁 자 : (사)한국농업경영인 거창군연합회(대표:구교천)
 - 위·수탁내용

- 주요사무 : 거창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판매장 시설 유지 관리
- 시설 및 장비

시설내역	장비내역
사과전망대 1층 거창농특산물 판매장 / 69.2m ²	○ 계산대 1식, 진열대 1식, 쇼케이스 1식 ○ 저장창고 1식(냉장고, 진열대), 썬크대 1식 ○ 냉난방 공조시설 및 POS 시스템

○ 위탁사무

- 시설 : 유통센터 토지·건물·기계·물류기기 유지관리
- 운영 : 농산물 수집·출하·판매기능 등

○ 운영현황

- 취급품목 : 사과, 사과즙, 장아찌 종류 등 20개 정도
- 매출현황 및 시설사용료 납부현황 (단위:천원)

구분	소계	2017년	2018년	2019년
매출액	200,444	40,555	67,222	92,667
사용료납부액	5,115	1,147	2,008	1,960

○ 위탁운영계획

- 위탁시설 : 거창사과전망대 거창농특산물 판매장 / 69.2m²
- 위치 : 거창한휴게소 광주방향 사과전망대 1층
- 수탁자 : (사)한국농업경영인 거창군연합회(대표 : 구교천)
- 위·수탁 내용 : 거창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판매장 시설 유지관리
- 위탁기간 : 2020. 4. 3 ~ 2023. 4. 2 / 3년

○ 소요예산 :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춘곤)

- 본 동의안은 광주-대구고속도로 거창한휴게소(광주방향) 사과전망대 내에 설치되는 『거창농특산물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등”을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특산물 판매와 홍보 등을 통한 농업인 소득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지역 내 농업인단체 등에 『거창농특산물판매장』을 민간위탁 함에 따른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